

의안번호	2201093
의 퇴 인	김예지 의원
회 답 일	2024. 7. 11.
추계번호	24C136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병역의무 수행 시 국민연금에 추가 산입해주는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실제 병역의무 수행기간으로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64년 1,617억원, 2073년 8조 3,168억원 등 2064년부터 2073년까지 8조 3,168억원(연평균 8,317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64~2073년

(단위: 억원)

	2064	2065	2066	2067	2068	합 계	연평균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안 제18조제1항)	1,617	3,234	4,813	6,273	7,687	83,168	8,317
	2069	2070	2071	2072	2073		
	9,105	10,485	11,868	13,295	14,790		

주: 1. 추계기간은 전망모형 상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2064년부터 2073년까지 10년으로 설정

2. 2023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군 복무 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 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50%를 적용) ※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50%를 적용)	의무지출성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의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크레딧 제도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통해 계산
 - 통계청이 202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2022년 말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
- 추계기간은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2064년부터 10년으로 함
 - 개정안 부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
 - 2025년 21세(평균 입대 연령)인 가입자는 2064년 60세에 도달하므로 추계 기간을 2064년에서 2073년으로 함
 - － 2064년에 군복무크레딧 지원을 받는 조기노령수급자가 처음 발생하고, 2069년에 군복무크레딧 지원을 받는 노령연금수급자가 처음 발생
- 추계기간이 장기이고 연금급여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지급되므로 2023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제시
 - 불변가격은 GDP디플레이터(2022.12.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로 각 연도 발생금액을 나누어 산출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비용추계의 대상은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추가 산입 기간을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로, “개정안 기준 적용 시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기준 적용 시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추계
 - 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산출

-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전망모형에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률과 사망률 및 장애발생률, 연령별 조기노령연금 수급률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노령연금 수급권자 수에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비율을 적용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
 - 개정안에 따른 군복무크레딧 대상자는 현역병¹⁾, 전환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며, 2025년부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개정규정 적용
 - (군 입대 연령) 2021년 현역병 평균 입대 연령인 21세 가정
 -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비율) 2010년 18세에서 시작하여 2021년 29세에 도달한 사람 중 군복무크레딧 대상이 되는 병역으로 입대한 사람 수(31.8만명²⁾)의 2021년 29세 남성 인구(39.4만명) 대비 비율(80.8%)을 산출하여 적용

- (병역의무 수행 기간) 2021년 말 기준 군 복무 중이거나 2021년 중도 귀가³⁾한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의 복무유형(복무기간)별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연도별·복무유형별 대상자 수를 산출하고, 연도별·복무유형별 복무기간과 대상자 수를 가중평균하여 대상자 전체의 평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산출

1) 징집병을 가리킴(장기복무로 전환하지 않고 제대한 학군장교 및 학사장교가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전체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대비 비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려하지 않음)

2) 병무청 제출자료

3) 현행법은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도 모두 포함함

- 현행법은 6개월 미만 복무자는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자도 최소 1개월 이상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개월 미만 복무자를 합하여 평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산출

[표 2]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군복무 기간

(단위: 개월)

연 도	육군 등 ¹⁾	해군 등 ²⁾	공군	사회복무요원	평균 복무기간 ³⁾
2021	18	20	21	21	18.9

주: 1) 육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2) 해군, 해양경찰

3) 평균 복무기간은 유형별 군 복무기간과 유형별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추정치)를 가중평균한 복무기간을 가리킴

자료: 국방부, 병무청, 소방청,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1인당 평균 연금급여액)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노령연금액을 산출하되, 현행제도 유지 시 추가 산입기간은 6개월, 개정안 적용 시 추가 산입기간은 18.9개월이 적용됨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은 연령별, 가입기간별 소득지수를 적용하여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연금액을 산출하고,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64년 1,617억원, 2073년 1조 4,790억원 등 2064년부터 2073년까지 8조 3,168억원(연평균 8,317억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64~2073년

(단위: 억원)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안 제18조제1항)	2064	2065	2066	2067	2068	합 계	연평균
	1,617	3,234	4,813	6,273	7,687	83,168	8,317
	2069	2070	2071	2072	2073		
	9,105	10,485	11,868	13,295	14,790		

주: 1. 추계기간은 전망모형 상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산입기간 확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2064년부터 2073년까지 10년으로 설정

2. 2023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